대구광역시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제출년월일 : 2018. 9. 21. 번호 5190 제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대구경북의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,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의 기능과 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, 공동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,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개정(안 제5조제2항)

- 나.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5조제5항 신설)
- 다. 과제발굴단 운영(안 제13조제3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18. 8. 30 ~ 9. 19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 2) 규제심사 : 대상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4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5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"행정부시장"을 "대구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"으로, "기획조정실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대구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"을 "시장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관한 실무적 검토 및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제3항 중 "위원장이"를 "시·도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공동으로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위원장은 사무국"을 "사무국"으로, "별도"를 "시·도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별도"로 한다.

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원회는 시·도 공동협력사업 발굴을 위하여 과제발굴단을 둘 수 있다.

제16조 중 "또는"을 "과제발굴단"으로, "회의에 참석한"을 "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"으로 한다 제17조 중 "위원장이"를 "시·도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<u>현</u> 행	개 정 안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 략)	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의 공동위원장은 <u>행정부시장</u> 이 되며, 부위 원장은 <u>기획조정실장</u> 이 된다.	② <u>대구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</u> <u>라 한다) 행정부시장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촉직 위원은 시·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학식,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사람 중에서 <u>대구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</u> 이 경상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와협의하여 공동으로 위촉한다.	④시장
<u>〈신 설〉</u>	⑤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관한 실무적 검토 및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 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제10조(사무국의 설치 등) ①·② (생 략)	제10조(사무국의 설치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 ③ 사무국장은 시·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<u>위원</u> <u>장이</u> 임명한다. ④·⑤ (생 략) 	③ 시·도 공동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공동으로 ④·⑤ (현행과 같음)
⑥ <u>위원장은 사무국</u>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<u>별도</u> 규정으로 정한다.	⑥ 사무국 시·도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별도
제13조(관련기관의 참여 및 의견 청취) ①·② (생략)	제13조(관련기관의 참여 및 의견 청취) ①·② (현 행과 같음)
<u>〈신 설〉</u>	③ 위원회는 시·도 공동협력사업 발굴을 위하 여 과제발굴단을 둘 수 있다.
제16조(수당 등) 위촉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16조(수당 등) , <u>과제발굴단</u> , <u>회의</u> 및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
제17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<u>위원장이</u> 따로 정 하다	제17조(운영세칙) <u>시·도 공동위원장이 서로</u> 형의하여

관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대구광역시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5항 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 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위원장 격상 등 위원회 구성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.

4. 작성자 :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 박 희 준